

주주여러분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HJ중공업 남영빌딩 3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결의사항

제 1 호 의안 : 제19기(2025.1.1 ~ 202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참조】

- 제 2-1 호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개최 방식 수정 및 신설 (제19조)
- 제 2-2 호 : 의결권 대리 증명방법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변경 (제26조)
- 제 2-3 호 : 이사의 수 변경 (제28조)
- 제 2-4 호 : 이사 선임 규정 변경 (제32조)
- 제 2-5 호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모든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제36조의 2, 제39조의 2)
- 제 2-6 호 :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 (제29조)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참조】

- 제 3-1 호 : 사내이사 송경한 선임의 건
- 제 3-2 호 : 사내이사 유상철 선임의 건
- 제 3-3 호 : 사외이사 최선임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별첨 참조】

- 제 4-1 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규진 선임의 건
- 제 4-2 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인범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 최선임 선임의 건 【별첨 참조】

제 6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별첨 참조】

4. 경영 참고 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및 당사 본 . 지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17일 (화) ~ 2026년 3월 26일 (목)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한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7. 기타사항

-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 5가)

주 식 회 사 H J 증 공 업

대 표 이 사 김완석, 유상철 (직인생략)

【별 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19조 (소집지) (개정)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 및 주된 공장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좌동)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좌동)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
제 28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28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수 최대 정원 변경
제29조 (이사의 선임) ④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④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 이상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 이상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등기이사외에 비등기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
제36조의2 (위원회) ① ~ 1. (생략)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5. (생략)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제36조의2 (위원회) ① ~ 1. (좌동)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5. (좌동)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회사의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한다.	- 사외이사 명칭변경
제39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	제39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좌동)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	- 사외이사 명칭변경

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 (생략)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좌동)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 ⑥ (좌동)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 모든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 사외이사 명칭변경
(부칙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21. 이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 19조 및 제 26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의 2, 제39조의 2 (제39조의 2의 4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9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경우부터 적용한다.	- 각 항목별 시행시기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단서로 개정시기를 각각 달리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진행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성 명	생년월일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추 천 인	기간	내용		
송경한 (사내이사)	1963.08.19	2024~현재 2016~2024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동부엔지니어링 경영지원본부장	-	-
	이사회				
유상철 (사내이사)	1964.05.04	2022~현재 2021~2022 2021~현재	(주)HJ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 (주)HJ중공업 부사장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 대표이사	임원	-
	이사회				
최선임 (사외이사)	1967.07.30	2010~현재 1999~2005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겸임교수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내이사 후보 송경한의 임기 : 취임 후 3년 이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 사내이사 후보 유상철의 임기 : 취임 후 2년 이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 사외이사 후보 최선임의 임기 : 취임 후 1년 이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추 천 인	기간	내용		
이규진 (사외이사)	1964.12.01	2022~2025 2021~2022 2021~2021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 본부장(CISO 겸)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인프라본부 본부장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전인범 (사외이사)	1958.09.06	2013~2015 2013~2013 2013~2013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전인범, 이규진의 임기 : 취임 후 3년 이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최선임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추 천 인	기간	내용		
최선임 (사외이사)	1967.07.30	2010~현재 1999~2005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교수 용인송담대학교 겸임교수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이사보수 한도액
제 19 기 (2025년)	5 (3)	1,500백만 원
제 20 기 (2026년)	5 (3)	1,500백만 원